

자금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위탁운용 자산유형별 배분계획의 의결기구 변경사항을 자금운용규정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위탁운용 자산유형별 배분계획은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정함(안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○ 주소 :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관리처

○ 담당자(이메일) : 김정민 차장(jmkim15@khug.or.kr)

○ 전화번호 : 051-955-5735

○ 팩스번호 : 051-955-5307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실무운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자금운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속한 규정 개정 필요

첨부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18조 (자금운용위원회의 기능) ① 자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위탁규모, 위탁기관 등 위탁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자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위탁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내 위탁기관간 자금배분, 위탁기관 수 등 세부사항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5. ~ 6. (생략) ③ (생략)	제18조(자금운용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위탁운용에 관한 중요사항</u> <u>가. 위탁운용 총 규모</u> <u>나. 위탁운용기간</u>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위탁운용에 관한 일반사항</u> <u>가. 전담운용기관 수</u> <u>나. 전담운용기관간 자금배분</u> <u>다. 자산유형별 배분계획</u> 5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자금운용 관련 권한위임체계 재정비 (감사실 일상감사 의견사항 반영)